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3
----------	------

2021년 8월 3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0일, 송명화 의원 외 20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송명화 의원)

가. 제안이유

-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한강 수상레저시설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이 재 효)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안전관리계획 수립,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입법 취지 및 필요성

-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제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국내 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도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음.

특히,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水上)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추진기관이 부착된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레저 활동보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역시 높아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상레저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2) 세부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총 1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한강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시 시민들이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한강 사업본부장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3항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즉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상응하며, 현재 한강사업 본부는 이를 근거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수상레저시설 위반사항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고 발	과태료	개선명령	현장시정
2020	234	1	17	161	55
2019	374	-	6	296	72
2018	471	-	2	241	228

- '20년 고발 건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무허가 수상레저 영업행위 적발)

- 안 제6조는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서 시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는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강행 규정이 아닌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운영비 지원이나 특정 단체 지원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안 제8조 및 제9조는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난지한강공원 일대에 한강 내 최초 공용 계류장 및 교육·훈련용 수상레포츠 통합센터가 조성 중에 있으며, 매년 수상안전 교실 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시설 현황〉

구분	규모	주요기능	시설 배치
수상계류장	523m ² /70척	계류 및 훈련	요트, 보트, 조정, 카누 등 정박·계류
육상계류장	5,000m ² / 150척	선박 보관	보관장 1(2,260m ²), 보관장 2(2,740m ²)
통합지원 센터	1층, 611.4m ²	교육 및 편의시설	교육장, 탈의실, 샤워장, 휴게실, 화장실 등
	2층, 615.5m ²	휴게공간	커뮤니티룸(휴게공간), 창고 등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감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의2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①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2. 한강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한강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한강 수상레저 관련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한강 수상레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